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6. 12 선고 2020가단335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6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 전 2396㎡에 건축된 지상 건물 중,
(1) 별지 도면 표시(가) 건물 철파이프조 작업장 320㎡를, 같은 도면 표시(나) 건물 철파이프조 작업장 129㎡, 같은 도면 표시(다) 건물 조립식 페널조 창고 28㎡를 각 인도하고,
(2) 별지 도면 표시(가) (나) 건물안에 건축된 조립식 페널조 작업장 663㎡를, 같은 도면 표시(라) 건물 조립식 페널조 화장실 1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 678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박경열

별지